

의안번호	2209036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5. 6. 5.
추계번호	25B168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8,000만원(연평균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물류취약지역 협의체의 구성·운영 (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36	36	36	36	36	180	36

주: 1.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 사례 및 물류취약지역 협의체 구성·운영(안)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식, 편성 예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기간 동안 회의 및 참석위원 수, 참석수당 및 임대료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1. ~ 5. (생략) 6. <u>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을 위한 연구</u>	재량규정
2	안 제23조의2 (물류취약지역 협의체의 운영 등)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음(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을 위한 연구’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 주체, 사업의 규모 및 주요 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현 시점에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2	안 제23조의2 (물류취약지역 협의체의 운영 등) 제1항	○	• 유사사례 등 참고 -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비용
3	안 제23조의2 (물류취약지역 협의체의 운영 등) 제2항 및 제3항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개정안에 따라 사업구역별 전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생활물류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의 수,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방식,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여 현 시점에서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물류취약지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물류취약지역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 사례의 운영 비용(참석위원 수당, 임대료)’과 ‘물류취약지역 협의체 구성·운영(안)’을 참고하여 추계
- ※ [참고자료] ‘물류취약지역 개요’ 참조
-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 사례 구성·운영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 유사 사례 운영 사례

사례명	구성 목적	구성 인원 수 (공무원 위원 제외)	연간 회의 개최 수	연간 소요비용(단가)	
				참석수당/회	임대료/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위원회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등의 심의	화물차주 대표 3인, 운수사업자 대표 3인, 화주 대표 3인, 공익 대표 4인	10회	일반 대표위원: 15만원 , 공익 대표위원: 25만원	회의실 임대료: 80만원 *서울역(KTX) 별실 평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물류취약지역 협의체 구성·운영(안)은 다음과 같음

[표 3] 국토교통부의 물류취약지역 협의체 구성·운영(안)

구 분	내 용
위원 구성 (공무원 위원 제외)	－ 일반 대표(관련 사업자·종사자·이해관계자 등) 28인 : 택배서비스사업자 대표 19인¹⁾, 한국통합물류협회²⁾ 대표 3인,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³⁾ 대표 3인, 물류취약지역 택배기사 대표 3인 － 공익 대표(관계 전문가 등) 4인
연간 회의 개최 수	－ 연 6회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8,000만원(연평균 3,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물류취약지역 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인, 회,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참석수당 (일반대표 위원)	위원 수(a)	28	28	28	28	28	—	—
	회의 수(b)	6	6	6	6	6	—	—
	참석수당(c)	0.15	0.15	0.15	0.15	0.15	—	—
	소계(A=a×b×c)	25.2	25.2	25.2	25.2	25.2	—	—
참석수당 (공익대표 위원)	위원 수(d)	4	4	4	4	4	—	—
	회의 수(e)	6	6	6	6	6	—	—
	참석수당(f)	0.25	0.25	0.25	0.25	0.25	—	—
	소계(B=d×e×f)	6	6	6	6	6	—	—
회의실 임대료	회의 수(g)	6	6	6	6	6	—	—
	임대료(h)	0.8	0.8	0.8	0.8	0.8	—	—
	소계(C=g×h)	4.8	4.8	4.8	4.8	4.8	—	—
물류취약지역 협의체 운영비용(A+B+C)		36	36	36	36	36	180	36

주: 1.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 사례 및 물류취약지역 협의체 구성·운영(안)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식, 편성 예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기간 동안 회의 및 참석위원 수, 참석수당 및 임대료 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1) 2025년 6월 현재 택배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수는 19개사업
- 2) 「물류정책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로 구성된 물류관련협회
- 3)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 진국한진대리점협회, 로젠택배전국지점장협의회 등 4개 택배대리점 단체 및 택배사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생활물류택배서비스 대표 단체

IV. 부대의견

-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 사례 및 물류취약지역 협의체 구성·운영(안)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식, 편성 예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물류취약지역 개요

- 현행법⁴⁾에서는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⁵⁾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음
 - 현재 지정·고시된 물류취약지역은 읍·면·동 기준 총 228개소(시·군·구 기준 56개소)임

[표 2] 물류취약지역 지정 현황

구분	물류취약지역(56개 시·군·구 내 228개 읍·면·동)
부산(1)	강서구(가덕도동)
인천(4)	중구(용유동), 서구(신현원창동), 강화군(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옹진군(북도면, 연평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영흥면)
경기(3)	안산시(대부동), 화성시(우정읍, 서신면), 가평군(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북면, 조종면)

4) 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법 시행령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물류취약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2. 생활물류서비스의 요금 수준

3. 화물의 배송에 소요되는 시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취약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분	물류취약지역(56개 시·군·구 내 228개 읍·면·동)
강원(13)	춘천시(동산면, 북산면), 원주시(귀래면), 삼척시(가곡면), 홍천군(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영귀미면), 횡성군(안흥면, 둔내면, 공근면, 서원면), 영월군(상동읍, 북면, 남면, 주천면, 김삿갓면, 한반도면, 무릉도원면, 산술면), 평창군(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정선군(남면, 북평면, 임계면, 화암면, 여량면), 철원군(철원읍,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서면, 근남면), 화천군(화천읍,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양구군(동면, 방산면, 해안면, 국토정중앙면), 인제군(남면, 북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고성군(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충북(1)	영동군(용화면)
충남(6)	보령시(웅천읍, 오천면, 주산면, 미산면), 서산시(팔봉면, 지곡면), 당진시(석문면), 서천군(장항읍), 홍성군(서부면), 태안군(안면읍, 근흥면)
전북(7)	군산시(옥도면), 완주군(상관면), 진안군(용담면, 성수면, 정천면, 주천면), 무주군(무풍면), 장수군(장수읍, 변암면), 고창군(심원면, 부안면), 부안군(계화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위도면)
전남(10)	목포시(유달동), 여수시(돌산읍,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월호동), 고흥군(도양읍,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영남면, 과역면), 보성군(별곡읍, 문덕면), 해남군(화산면, 송지면, 화원면), 무안군(망운면), 영광군(낙월면), 완도군(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진도군(진도읍,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신안군(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경북(3)	영덕군(창수면), 봉화군(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울릉군(울릉읍, 서면, 북면)
경남(6)	통영시(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육지면, 한산면, 사랑면), 사천시(동서동), 양산시(원동면), 남해군(상주면, 미조면), 하동군(금남면, 진교면), 합천군(봉산면)
제주(2)	제주시(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자료: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02호)